

통보

개정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태국

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

TISI(태국산업표준원), 산업부

위의 내용과 다를 경우, 고지에 관련된 의견을 처리하도록 지정된 기관이나 담당기관 이름과 주소(가능한 경우, 전화 및 팩스 번호, 이메일 및 웹사이트 주소를 포함)를 표시해야 한다.

WTO/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

TISI(태국산업표준원), 산업부

전화: (662) 430 6831 내선번호: 2130

팩스: (662) 354 3041

이메일: [thaibtbt@tisi.mail.go.th](mailto:thaibtbt@tisi.mail.go.th)

웹사이트: <https://www.tisi.go.th>

3. 조항 2.9.2 [X], 2.10.1 [ ], 5.6.2 [ ], 5.7.1 [ ], 3.2 [ ], 7.2 [ ], 기타에 근거해 통보:

4. 해당제품(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,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율 제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카테고리 M 및 N 차량의 REESS(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) (ICS 43.120)

5. 제목(페이지수, 언어): 카테고리 M 및 N 차량의 REESS(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)에 관한 장관령 초안(TIS 3026-2563(2020)), (9페이지, 태국어)

6. 내용: 장관령 초안에 따르면 카테고리 M 및 N의 BEV(배터리 전기차) 추진을 위한 REESS(충전식 전기 에너지 저장시스템)는 전기 파워트레인에 관한 특정 요건과 관련하여 카테고리 M 및 N의 차량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(TIS 3026-2563(2020)).

본 규정은 카테고리 M 및 N의 BEV(배터리 전기차) 추진을 위한 REESS(충전식 전기에너지 저장시스템)에만 적용된다.
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

8. 관련 문서:

UN 규정 No.100 개정 2: 전기 파워트레인의 특정 요건 및 그 개정판에 관한 특정 요건의 차량 승인에 관한 통일 조항.

9. 채택 예정일: 추후 결정

시행 예정일: 관보 게재일로부터 180일

10. 의견 마감일: 통보일로부터 15일

11. 문건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: 국가 질의처 [ ] 또는 주소, 전화와 팩스 번호, 그리고 이메일과 웹사이트 주소, 해당할 경우, 다른 기관:

WTO/TBT 질의처 및 통보 기관  
TISI(태국산업표준원), 산업부  
전화: (662) 430 6831 내선번호: 2130  
팩스: (662) 354 3041  
이메일: [thaitbt@tisi.mail.go.th](mailto:thaitbt@tisi.mail.go.th)  
웹사이트: <https://www.tisi.go.th>

[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THA/24\\_00914\\_00\\_x.pdf](https://members.wto.org/crnattachments/2024/TBT/THA/24_00914_00_x.pdf)